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.

2016 년 6월 30일

여 수 시 장

제1조 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고시는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 (승객의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어선 안전운항, 사고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(이하 "낚시어선업자 등"이라 한다)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 지 확인한 후 승선하여야 한다.

- ③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낚시어선의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2. 선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항에 방해가 되는 행위
 - 3. 유해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
 - 4. 폐기물 투기, 취사 및 그 밖에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
 - 5. 「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」제5조 에 따른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으로 낚시어선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- ④ 기상악화 및 그 밖의 위험상황 발생 등으로 인한 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등이 승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승객은 즉시 따라야 한다.

제4조 (생활폐기물의 수거) 낚시어선 승객은 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 제2호의 생활폐기물(이하 "생활폐기물" 이라 한다.)을 해상 및 낚시터 주변에 투기해서는 아니되며, 「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.(신설)

제5조 (확인 및 검사) ① 관계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이 수거한 생활폐기물 실적 등을 불시에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.(신설) ② 낚시어선 승객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(신설)

③ 관계 공무원은 확인 및 검사 전에 낚시어선 승객에게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 제시하여야 한다.(신설)

제6조 (수산자원의 보호) 낚시어선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(포획 채취금지)를 준수하여야 하며, 포획이 금지되는 수산자원을 포획한 경우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 시행 전까지 변경되지 아니한 고시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,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고시 제2015-125호(2015.5.29.), 2013-330호(2013.12.12.), 2013-22(2013.1.10.) 는 폐지한다.